

재가장애인 지역생활 지원사업 개요

사업 개요

* 재공고에서 변경된 사항: 지원대상 확대('독거 재가장애인' 추가)

목적: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지속 지원

- 1) 신청기관: 사례관리 및 개인별지원서비스 수행기관
- 2) 사업기간: 2025년 6월 ~ 2025년 11월
- 3) 지원대상: 고령 부모와 거주 중인 재가장애인, 고령 재가장애인, 독거 재가장애인
(기관당 최소 2명 이상)
- 4) 지원내용: 기관당 360만원 지원
(맞춤형 지원, 이웃공동체 활동 320만원 / 수행인력 활동비 40만원)
- 5) 수행인력 역할: 지원금으로 당사자 맞춤형 지원 및 이웃공동체 활동 추진
월 3회 이상 당사자 모니터링(유선연락 가능 / 방문은 월 1회 이상)
- 6) 대상자 선정기준

구분	고령 부모와 거주 중인 재가장애인	고령 재가장애인
기본 사항	☐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, 신청기관 행정구역 소재지 내 거주하는 자 ☐ 65세 이상 부모와 거주하는 성인 재가 장애인	☐ '전북 고령 장애인 기준 조례' 의거 55세 이상인 자(발달장애인의 경우 40세 이상)
1순위	☐ 차상위계층	☐ 독거 중인 자
2순위	☐ 기초생활수급자	☐ 차상위계층
3순위	☐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	☐ 기초생활수급자
4순위	☐ 부모 중 1명이 부재 또는 사망한 경우	☐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5순위	☐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	

구분	독거 재가장애인
기본 사항	☐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, 신청기관 행정구역 소재지 내 거주하는 자
1순위	☐ 차상위계층
2순위	☐ 기초생활수급자
3순위	☐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
7) 세부일정 계획

구 분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
기관 모집	▶	▶				
기관 선정		▶				
사업수행(선정기관)		▶	▶	▶	▶	
중간점검			▶	▶		
정산보고					▶	▶
간담회						▶

문의: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'협력형 사례관리 지원사업' 담당자(070-4774-3091)

II

지원 내용

구분		내용	비고
맞춤형 지원	난방지원	○ 난방 연료(등유, 연탄, 화목 구입만 해당)	
	건강지원	○ 진찰, 검사, 약제, 수술, 입원, 이송, 심리치료, 의료기기 구입 등 의료 목적의 지원 * 동거 중인 가족 포함	
	주거환경 개선	○ 가스타이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○ 도배·장판, 기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	
	자립 물품 지원	○ 그 외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자립동기가 강화될 만한 물품	
이웃공동체 활동 (주민조직화)		○ 이웃 공동체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(비예산 진행 가능) * 대상자별 1회 이상 필수	
○ 지원 불가 내용 - 신청일자 기준으로 신청일자 이전에 기 납부된 비용 지원 불가 - 1개 지출건에서 90만원 이상 지출 불가			